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제정 2018. 11. 16 조례 제29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민·사회단체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안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2.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